

수련치과병원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 조사업무의 위탁

제 정 2003. 9. 19. 보건복지부고시 제2003-52호, 시행 2003. 9. 19.
전부개정 2020. 2. 27.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-48호, 시행 2020. 2. 27.
일괄개정 2020. 7. 1.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-140호, 시행 2020. 7. 1.
일부개정 2024. 7. 19.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-146호, 시행 2024. 7. 19.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」 제20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 업무 등의 수탁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련관련 업무의 위탁) 보건복지부장관은 「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」 제20조 각 호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, 수련치과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, 치과의사전공의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조사, 수련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의 업무를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위탁한다.

제3조(재검토기한)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003-52호, 2003. 9. 19.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020-48호, 2020. 2. 27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020-140호, 2020. 7. 1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024-146호, 2024. 7. 19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